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(이촌1동 302-75) [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김선우 [6576] 대리 고영옥 [6573]/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6573호

시행일자 2017. 9. 29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복지부 고시 제2017-170호)」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

1. 관련근거
   - 보건복지부, 고시 제2017 - 170호(2017. 9. 25)
   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6309호(2017. 9. 26)

2. 위 호 관련, 지난 대의협 제813-6309호(9/26)로 이미 안내해드린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70호)」 관련 추가 안내입니다.

3. 보건복지부에서 개정된 고시와 관련한 질의응답 사항을 추가로 안내하여,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1. 의협 공문 1부,
2. 개정 고시문 1부,
3. 신경인지기능검사 관련 질의응답,
4. 난임치료시술 관련 질의응답,
5. 아동본인부담률 인하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,
6. 환자안전관리료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